

광주지방법원 2022. 1. 11 선고 2021가단52670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자산관리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2. 7.

판 결 선 고 2022. 1. 11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3 지분에 관하여 2019. 4. 1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8,497,7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8,497,7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박옥희

청 구 원 인

- D 주식회사는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49199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갖고 있었고, 원고는 2015. 6. 18.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.
- E는 2019. 1. 9. 사망하였고,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, 자녀들인 C, F, G, H, I가 있었는데, 망 E의 상속인들은 2019. 4. 1. 피고가 망 E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, 피고는 2019. 4. 2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이었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무자력이 되었다.
-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중 2/13 지분(C의 상속지분)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-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. 5. 8. 채권최고액 472,000,000원, 채무자 E,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'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'는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졌고,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9. 4. 24.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으므로,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종결시 가액은 195,000,000원,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상속

재산분할협의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10,332,907원, 원고의 C에 대한 변론종결시 피보전 채권액은 8,497,736원[184,667,093원(= 195,000,000원 - 10,332,907원) $\times$ 2/13 = 28,410,320원(10원 미만 버림)보다 적은 금액]이므로, 가액배상액은 8,497,736원이다.

○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중 2/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8,497,7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8,497,7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목 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광주 북구 J, K에 있는 L아파트 M동

피.시조 및 라멘조 슬래브지붕 9층 아파트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광주 북구 J 대 19592㎡

2. 광주 북구 K 대 3812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7층 N호

피.시조 및 라멘조 84.840㎡

(대지권의 표시)

1. 소유권대지권 23404분의 54.350

2. 소유권대지권 23404분의 54.35. 끝.

- 1) 2021. 11. 11.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“2019. 4. 2.”은 “2019. 4. 1.”의 오타로 보인다.